

1. 개정이유

「공소청법」의 시행으로 검찰청의 명칭이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검사의 수사권 보유를 전제로 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공소정보 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용어와 본 규칙의 용어를 통일하고, 전자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검찰 또는 검찰청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공소청으로 개정
- 나. 검사의 수사권 보유를 전제로 한 용어 정비 및 공소정보존사무규칙
과의 용어 통일
- 다. 전자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공소제기·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제2조제1호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이하 “전자재판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 중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내사중인 사건기록”을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검찰설비”를 “공소청 설비”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을 “전자약식사건기록”을 “전자기록”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연필로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검찰설비”를 “공소청 설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 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공소제기·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 기록, 진정·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

1의2.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

----- . 이 경우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
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
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한 재판서(이하 “전자재판서”
라 한다)를 포함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검사가 검토 중
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생략)

② 검사는 열람·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제3항(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

--- 직접 -----

-----.

② -----

----- 해당 공소청(지방 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 -----
-----.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의2제2항 -----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
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